

Latest Legal News and Developments
from the MENA Region

Korean News Digest



Issue #09
(FW 2023)



인사말

안녕하세요. AI Tamimi & Company의 Korea Group입니다.

올 초 아랍에미리트로의 국민 방문 이후 각 부처 별로 장관급, 실무자급의 추후 미팅들을 통해 체결했던 MoU들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한 교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중동 붐의 진원지인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은 전통적인 부문인 건설, 인프라뿐 아니라 물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블록체인, 헬스케어, 바이오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동 지역 수주 실적은 70억 2000만 달러로 기록되었고, 이는 지난 상반기 같은 기간보다 552.3% 증가한 성과이며 최근 8년간 중동 지역에서 거둔 상반기 수주 실적 중 최대치입니다. 하반기에는 중동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는 바, 건설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AI Tamimi & Company (이하 "알타미미") Korea Group (이하 "한국팀") 도 중동 지역에 대해 한층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관심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4월 17일, 해외건설협회의 후원 하에 "사우디 . 중동 진출의 새로운 전략: 최신 법률 및 세무 리스크 관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6월 22일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후원 하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2023 중동 법률 이슈 체크: 금융 및 건설 분야" 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중동 로펌으로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의 법률 정보 및 현지 동향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적절한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여 중동 지역의 규제, 법률, 사업 환경의 변경 및 주목할 사항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Korean News Digest 9호는 2023년 상반기 중동 지역의 주요 법률 이슈들을 한국어로 정리한 자료로서, 중동 지역 진출 계획을 검토할 때 유용한 자료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의 주된 법률 및 규제의 신설 및 개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신속하여 공유하여 중동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우리 기업 관계자들에게 현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법률 자문사로서 현지의 정보와 동행을 발빠르게 전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타미미 한국팀 배상

주요 연락처



오마르 변호사
Omar Omar
Partner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Counsel
j.ha@tamimi.com



송형민 변호사
Hyungmin (James) Song
Senior Associate
h.song@tamimi.com

Table of Contents

| | |
|--|----|
| Legal Landscapes in Transition | 4 |
| Business Horizons Altered: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 9 |
| Beyond Borders: Understanding of Rules of Origin in the GCC States and Saudi Arabia's Logistics Vision | 17 |
| Navigating the Saudi Construction Law landscape and Amicable Dispute Resolutions | 22 |
| Financing the Future: Sustainable Loans Meet ESG Trends in the Region | 33 |
| Al Tamimi & Company News | 40 |

Legal Landscapes in Transition



[UAE] Part 1: The Effect of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s Law on the Islamic Finance Industry

- UAE 에서는 약 30년간 지속되어 오던 기존의 상거래법 (Law No. 18 of 1994) 을 대체하는 신규 상거래법 (Federal Decree by Law No. 50 of 2022, Promulgating the Commercial Transaction Law) 이 승인되어 올해 1월 2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본 신규 상거래법의 많은 조항들은 무라바하 (Murabaha), 이스티나 (Istisna), 이자라 (Ijarah), 살람 (Salam) 등 이슬람금융에서 활용되는 주요 구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슬람금융의 주요 허브국가로서 성장하고 있는 UAE의 전반적인 이슬람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제473.1조

이슬람금융기관은 대출시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연체에 대한 보상으로 연체 이자 (delay interest) 를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이슬람금융기관은 실질 (actual) 및 직접 (direct) 비용만 청구가 가능함.

b) 제475조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 (promise)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야 하며, 이는 이슬람금융에도 적용됨. 다만 역시 실질 및 직접비용만 청구가 가능함.

c) 제 495(3)조

이자라 (Ijarah) 구조에서 리스자산의 기본적인 유지보수 및 보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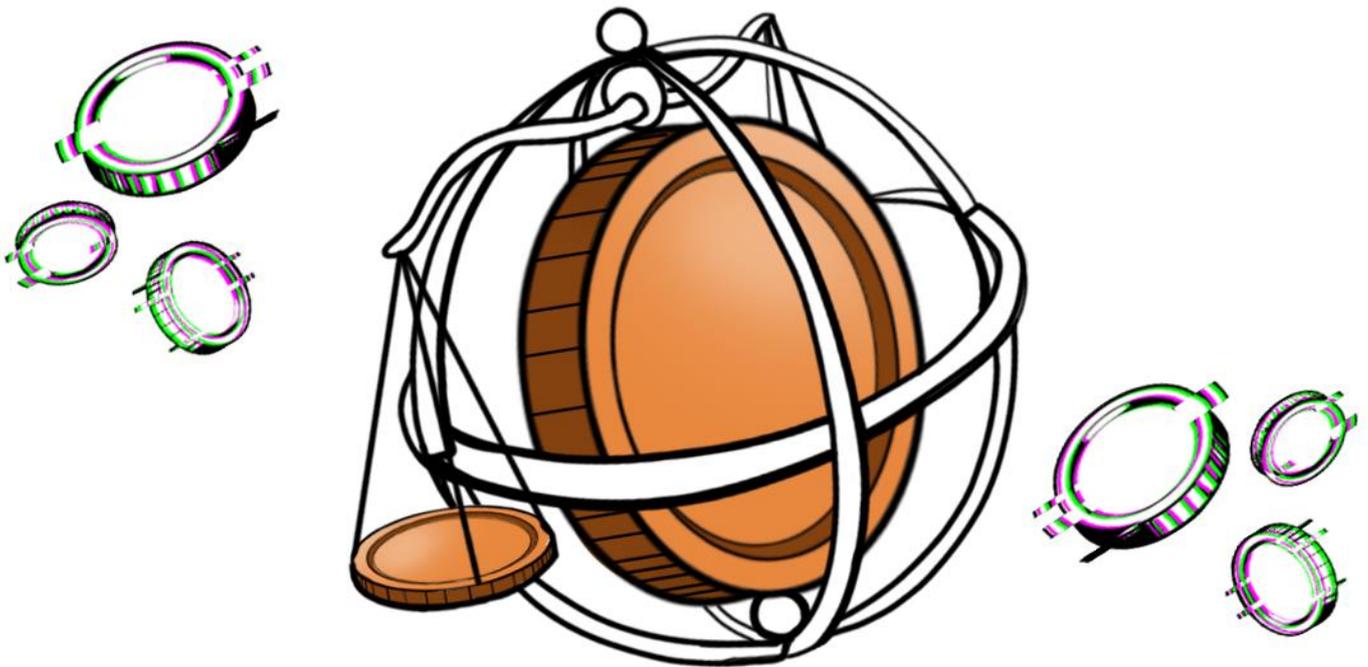


January 2023

[New UAE Laws - Part 1: The Effect of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s Law on the Islamic Finance Industry - Al Tamimi & Company](#)

[UAE] Part 2: Issuance of UAE Cabinet Decision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 Activities and Service Providers

- UAE에서는 가상자산 (Virtual Asset) 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을 관장하는 내각 결정 (Cabinet Resolution No 111 of 2022) 를 발표하여 202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결정은 프리존을 포함한 UAE 메인랜드 내의 모든 가상자산 관련 산업과 사업활동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적용되나, 금융 프리존인 DIFC 및 ADGM 내의 가상자산사업과 증권상품감독청 (SCA)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디지털 증권 (Digital Security) 및 디지털상품 (Digital Commodities) 계약 및 UAE 중앙은행 (Central Bank) 감독을 받는 지급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결정에 의해 UAE 내에서 아래 열거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증권상품감독청 혹은 그 산하 자산자산감독청으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과 관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가상자산 또는 복수의 가상자산 사이의 교환 서비스 제공
 - 가상자산 이전 서비스 제공
 - 가상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 제공
 - 가상자산 전자지급 관련 서비스 제공
 - 가상자산의 공모 및 거래 등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 제공



January 2023

[New UAE Laws Part 2: Issuance of UAE Cabinet Decision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Asset Activities and Service Providers - Al Tamimi & Company](#)

[UAE] Part 3: The Effect of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s Law on Financial Activities

- UAE 신규 상거래법이 이슬람금융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소개한 앞선 기사에 이어, 본 기사에서는 금융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상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전자상거래

상행위 관련 전자거래 및 기술기반 상행위 등이 인정됨.

2. 보증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신규 상거래법에서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부분 책임에 대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

3. 법정이자

이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결정되나, 분쟁 시 법원에서 결정하는 법정이자율은 종전 12%에서 9%로 변경되었고, 복리(compounded interest)는 금지됨.

4. 유동자산에 대한 담보

유동자산에 대한 담보는 유동자산담보법(Movable Assets Security Law)에 따라 규정되나, 등기된 담보의 경우 여전히 상거래법이 적용됨.

5. 담보확보

신규 상거래법에서는 대출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충분한 담보 및 보증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6. 지급보증

신규 상거래법에서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은 지급 거부가 가능해짐.

7. 법률상 성년

상행위를 위한 법률상 성년의 나이가 18세로 어려짐.

8. 시효 (Time Bar)

통상적인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게 됨.



February 2023

[New UAE Laws Part 3: The Effect of the New Commercial Transactions Law on financial activities - Al Tamimi & Company](#)

[Bahrain] The Central Bank of Bahrain introduces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Tokens in Bahrain

- 바레인 중앙은행은 규정집 (rulebook) 의 6집 (자본시장) 암호화자산 모듈 (이하 “**CRA Module**”) 의 개정판을 2023년 3월에 발행했습니다.
- CRA Module 개정판은 바레인의 “디지털 토큰” (“바레인중앙은행 법하 규칙 및 규제가 적용되는 증권에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 혹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정의됨) 의 발행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가 도입된 것입니다.
- 바레인 중앙은행은 증권에의 정의에, “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암호화 자산, 즉, (i) 사전에 결정된 현금 지급의 형식 (채권과 유사) 혹은 수익에 대한 지분의 형식 (주식과 유사) 의 권리를 제공하는 암호화 자산”, (ii)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권을 제공하는 (투표권과 유사) 암호화 자산, 혹은 (iii) 발행인에 대한 화폐적인 청구권이 있는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는 특성들을 추가했으므로, 디지털 토큰이 증권으로 적격한 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바레인 중앙은행은 디지털 토큰의 근본적인 경제적 목적,

구조, 특성 및 토큰에 부여된 권리들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 CRA Module 개정판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사이버 보안 통제 가이드라인의 도입도 포함하며, 암호화 자산 라이선스 보유자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으면 명시된 암호화 자산 규제 서비스외의 활동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 CRA Module 의 개정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암호화자산 시장의 지속적인 개발 및 산업 부문의 모범 사례를 준수함으로써 바레인의 암호화자산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April 2023

[The Central Bank of Bahrain introduces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Tokens in Bahrain - Al Tamimi & Company](#)

Business Horizons Altered: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UAE] New Penalties Announced: Can my LLC be hit with a fine?

내각에 의해 도입된 신규 벌금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 내각은 UAE 회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벌금 규정을 공포하는 벌금법 (Cabinet Resolution No. (102) of 2022 Promulgating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Regulations Regarding Act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Federal Decree-Law No. (32) of 2021 regarding Commercial Companies)을 제정하여 UAE 메인랜드 내 설립된 모든 회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LLC 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

| No | 항목 | 위반 내용 | 벌금 |
|----|------------------------------|---|---|
| 1 | 지분비 요건 (Ownership) | 해당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UAE 국적자의 지분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AED 100,000 |
| 2 | 상호 변경 (Trade Name Change) | LLC의 상호 변경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월 AED 500 (벌금은 월별로 부과되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 영업일의 경과 후에 계산되며, 벌금 총액은 연간 AED 5,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3 | 회계 장부 (Accounting Registers) | 회계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AED 15,000 |
| 4 | 정보 열람 (Data Control) | LLC의 주주에게 총회 회의록, 자료 및 LLC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문서에 대한 접근(열람)을 거부할 경우 | AED 5,000 |
| 5 | 이사회 개최 (Board Meetings) | 이사회 회의에 이사회 회원을 초청하지 않을 경우, LLC의 이사나 이사회 의장, 또는 대리인에게 벌금 부과 | AED 3,000 |

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LLC 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

이전 페이지에서 이어짐

| No | 항 목 | 위 반 내 용 | 벌 금 |
|----|---|---|-------------------------|
| 6 | 주주총회 (General Assembly) |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LLC의 이사나 이사회 의장에게 벌금 AED 5,000부과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벌금AED 10,000 부과 | AED 5,000 AED 10,000 |
| 7 | 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2022년 1월 2일에 시행된 UAE 회사법에 따라 정관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본 위반 사항은 2023년 1월 2일에 UAE 회사법이 시행된 후 1년 이후부터 적용됨) | 월 AED 1,000 |
| 8 | 감사인 (Inspectors) | 당국의 감사인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LLC의 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 대표, 또는 LLC 감사인에게 벌금 부과 | AED 5,000 |
| 9 | 주식 처분 (Share(s) Disposal) | UAE 회사법을 위반하며 LLC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AED 20,000 |
| 10 | 기타 (Miscellaneous) | UAE 회사법이나 해당 규칙, 규정 또는 실행된 결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 AED 10,000 |

January 2023

[New Penalties Announced: Can my LLC be hit with a fine? - Al Tamimi & Company](#)

[UAE] A New Commercial Agencies Law enacted in the UAE

지난 40여년 간 현지 대리상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UAE의 대리상법의 개정이 공포되어, 2023년 6월 15일부터 개정된 대리상법 (Commercial Agencies Law no. 3 of 2022) 이 시행됩니다. 본 개정법은 대리상 계약 조건 협의 및 해지 시 외국 기업과 현지 대리상이 보다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동안 대리상은 일반적으로 UAE 자국민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지만, 개정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UAE 내각의 허가를 받아 외국 기업도 대리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상 계약 기간, 계약 해지에 대해 외국 기업이 종전 보다 많은 통제권을 갖도록 허용합니다.

금번 개정법에 도입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다국적 기업은 UAE 내에서 대리인 등록의 요건없이 상거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대리상은 양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권리가 보전됩니다.
2. 대리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혹은 계약 조건에 따라 만료 및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시 대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3.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에 기등록된 대리상의 경우 대리상 계약의 만료 및/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은 2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기등록되었거나 1억 디르함

(AED 100 million) 이상 투자한 대리상의 경우 개정법은 10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대리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상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 개정법은 등록된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허용합니다. 개정법은 중재가 시작되면 분쟁과 관련하여 상거래위원회 (Commercial Agency Committee) 에서 내린 이전의 판단은 더이상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중재와 같은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더 익숙한 외국 기업에게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5. 개정법은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시장에 재화 및 용역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공급 및 수요를 위한 대체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에 부여합니다.

대리상법의 개정은 UAE 정부가 외국 기업, 현지 대리상 및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 국제 비즈니스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February 2023

[A new Commercial Agencies Law enacted in the UAE - Al Tamimi & Company](#)

[UAE]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What Do I Need to Know

2022년 9월 15부로 UAE 정부는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든 피고용인들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및 실직 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실업 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의 의의는 UAE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우수 인력 유치를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 1월, UAE 인적자원과 에미라티제이션부 (MoHRE) 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연방 법령 (Federal Decree Law No.13 of 2022 Concerning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을 발효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UAE 내 모든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국적과 근무지 (공공, 민간) 와 관계없이 해당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불가 대상

- 1) 본인 사업체를 소유/운영하는 자
- 2) 가사 도우미
- 3) 임시 계약직
- 4) 만 18세 미만 청소년
- 5) 퇴직·은퇴하며 퇴직금 수령 후 재취업한 자

또한 UAE 금융 프리존 (두바이국제금융센터 (DIFC)), 아부다비글로벌마켓 (ADGM))은 UAE 노동법과 별개로 자체 고용법 및 규정이 시행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비와 실업급여

피고용인들은 지난 12개월 간 실업보험에 가입했던 자라면 누구나 실직시 실업 기간동안 기존 기본급의 6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AED 16,000 이하의 기본급을 수령하던 피고용인의 경우, 매월 AED 5 의 보험금을 납입하면 최대 3개월까지 월 최대 AED 10,000 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월 기본급이 AED 16,000 이상인 피고용인의 경우, 매월 AED 10 의 보험금을 납입하면 월 최대 AED 20,000 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월, 분기,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UAE 실업보험금 지급 조건

- 1) 최소 12개월 연속 보험료 납부
- 2) UAE 내 합법적 체류자
- 3) 실직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금 수령 신청 (노동분쟁 및 노동 관련 소 제기 시, 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 신청)
- 4) 3개월 이상의 보험금 미납이 없어야 함
- 5)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불했거나 지불할 의무가 있어야 함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피고용인이 노동법 상 징계 사유 (중대한 위법 행위 포함) 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고, 보험금 청구에 사기 혹은 기만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보험 가입 및 등록 방법

'Insurance Pool'의 웹사이트 (www.iloe.ae), ILO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LOE) 및 두바이 보험 콜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ATM,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환전소, 이동통신사 Du 및 Etisalat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유예기간 및 벌금

실업보험 제도는 UAE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며, 2023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유예기간 내 보험 미 가입시, 벌금 AED 400 부과
- 2) 보험비 3개월 연속 미납 시, 보험 가입 취소 및 벌금 AED 200 부과

벌금은 임금 보장 시스템을 통해 징수되거나 퇴직금에서 공제됩니다. 벌금 미납시 취업 비자 발급 및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청구 주체

실업 보험 가입부터 실직 시 실업급여 청구까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비를 대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April 2023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What Do I Need to Know?-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What Do I Need to Know? \(tamimi.com\)](https://www.tamimi.com)

[KSA] New in Saudi Arabia: The rules of cross-border bankruptcy

크로스-보더 파산은 여러 국가들에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질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 본 건에 적용할 법률 선택, 관할권, 판결 집행 규칙 등을 비롯한 법률 충돌 문제가 일반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러나, 주된 관심은 외국 파산 당국과 당국의 권한을 인정하는 지에 종종 집중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국가간 조정 시스템이 없으면 국가간의 상반된 판단으로 시간 및 비용 등이 낭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1997년 유엔 국제 무역 법 위원회 (UNCITRAL) 는 여러 관할권에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크로스-보더 파산에 관한 모델법을 개발했고,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모델법을 도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크로스 보더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최초로 상공부장관이 새로운 규칙 (이하 "규칙") 을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 제정된 사우디아라비아 파산법 (Bankruptcy Law of Saudi Arabia) 를 기반으로 하는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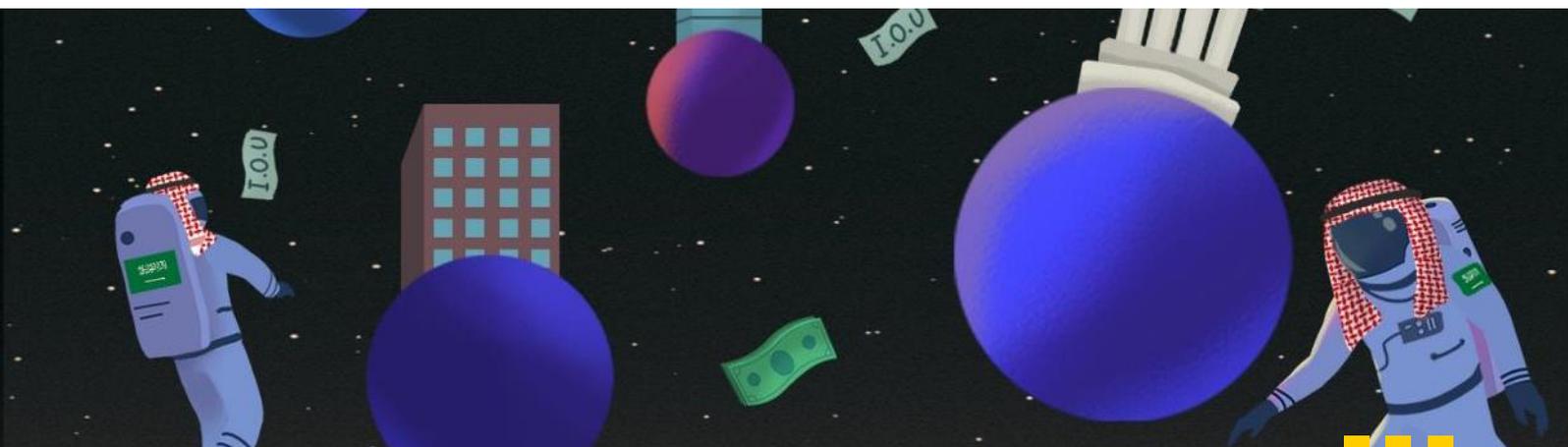
규칙은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에서 크로스-보더 파산 절차를 다룰 때 외국 파산 절차의 인정 및 외국 파산관재인 권한과 의무를 포함한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칙에서 정의된 핵심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파산 절차"는 "외국에서 파산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법 또는 행정 절차로, 파산법에 따라 외국 법원의 통제와 감독하에 채무자의 자산을 처리하는 절차"로 정의됩니다.
- "주요 외국 파산 절차"는 "채무자 사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정의됩니다.
- "비주요 외국 파산 절차"는 "주요 외국 파산 절차 외에, 인적 자원과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정의됩니다.

사용된 정의의 이해는 상이한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파산 절차를 이해하고, 채무자의 본사 소재 국가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본사 주재국 외에 채무자의 사업 활동이 있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구분하는 데에 유용합니다.



적용 범위

규칙은 여러 국가에 자산을 보유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 외국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법원 또는 외국 파산관재인인 사법 조력 요청으로, 외국 파산 절차의 인정, 파산 절차의 행정적 처리에 대한 지원, 사우디 내 외국 파산관재인 지정 및 사우디 내 채무인 자산의 처리 요청
-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국 파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두 절차를 조정
-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채권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파산 절차 또는 개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요청 처리

일반 원칙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규칙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한 국제 협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적으로 체결한 크로스-보더 파산에 관한 협약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원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우디 법원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사우디 법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치와 법률이 일관되도록 합니다.

규칙은 사우디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인 권한을 외국 파산관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합니다. 크로스-보더 파산 사건의 절차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우디 법원이 추가 지원도 제공하도록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산관재인과 외국 파산관재인인 권한

파산관재인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산법에 따라 외국 국가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외국 법원과 외국 파산관재인과 직접 의사소통하고, 법원의 감독 하에 협력합니다.

규칙에서 정의된 외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자산 또는 사업의 재구조 또는 청산을 위해 외국 파산 절차에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회사 또는 기관 등)입니다. 외국 파산관재인의 임명은 파산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입니다.

외국 파산 절차에서 선임된 외국 파산관재인은 사우디 법원에 외국 파산 절차의 인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크로스-보더 파산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칙은 여러 사법권에 걸친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한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우디 법원이 규칙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February 2023

[New in Saudi Arabia: The rules of cross-border bankruptcy - New in Saudi Arabia: The rules of cross-border bankruptcy, \(tamimi.com\)](https://tamimi.com)

Beyond Borders: Understanding of Rules of Origin in the GCC States and Saudi Arabia's Logistics Vision



Rules of Origin in the GCC States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국가들간의 제도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의 시행에 따른 차이로 인해 수입 물품의 원산지 (Country of Origin) 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은 수량 제한 또는 관세 할당량, 반덤핑 조치, 제품이 특혜를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무역 통계와 같은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2021년 걸프협력회의의 관세법 (GCC Customs Law) 에 따르면 원산지는 천연자원, 농작물, 광물 또는 공산품 등 상품이 생산되는 국가로 정의되는데, 두 가지 유형의 원산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1. 특혜 원산지 규정은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계약 또는 자유투 무역 협정에 따라 상품이 특혜 관세 대우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무역 협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2.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한 국가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률, 규정 및 행정적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관세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대신 무역 통계, 수량 제한, 반덤핑, 라벨링 및 정부 조달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걸프협력회의회원국 중 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걸프협력회의회원국으로 넘어갈 때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1년 GCC Economic Agreement에 따라 현지 제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걸프협력회의회원국은 각자의 국내 규정 이행을 통해 GCC Customs Law를 비준했지만, 원산지 증명에 관한 GCC Customs Law의 일반 규정은 발효 중인 국제 및 지역 경제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걸프협력회의회원국은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2006년 Revised Kyoto Convention의 서명국입니다. Revised Kyoto Convention은 상품의 원산지를 해당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Customs Tariff의 적용을 위해 규정된 기준에 따릅니다 (Chapter1, Annex K). 이 외에도 Revised Kyoto Convention의 원산지 규정은 아래 두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전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wholly obtain products): 해당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 (예,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살아있는 가축, 해당 국가에서 수확한 식물성 제품, 해당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성 제품) 을 의미합니다.
2. 실질적인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이 테스트는 두개 이상의 주가 최종 제품의 생산에 참여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세 가지 기준이 고려됩니다: (1) 관세 분류 변경, (2) 부가가치 비율 기준, (3) 제조 또는 가공 작업.

다음장에서는 각 걸프협력회의회원국이 변형되는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정 및 관행을 국가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 (이하 "**MOIAT**")는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의 의미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원산지 규칙 및 증명서에 관한 2019년 UAE Federal Law 제11호 (이하 "**UAE 원산지법**") 및 원산지법 시행에 관한 2022년 Executive Regulation 제43호 (이하 "**UAE 원산지법 규정**")에 따라 실행됩니다.

UAE 원산지법 규정 제(5)조는 제품에 마지막으로 수행된 주요 작업 또는 가공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특혜 원산지 결정을 위해) 가공, 작동 또는 제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리, 제조 또는 운영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경제적 타당성
- B. 해당 목적을 준수하여 설비된 시설을 사용할 것
- C. 새로운 제품의 제조하게되거나 제조의 주요 단계를 HS code 을 변경하여 표기할 것
- D. UAE 원산지법 제(4)조에 규정된 다음의 작업은 포함하지 않음
 - i. 환기, 확산, 건조, 냉각, 손상된 부품 제거 등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상품의 적절한 보존에 필요한 작업
 - ii. 먼지 제거, 필터링, 정리, 분류, 세척, 니스칠, 절단, 교체, 커버의 분리 및 조립, 병, 유리병, 봉지, 캔 또는 상자에 단순

포장, 제품 또는 상자에 상표 라벨 부착, 단순 혼합, 가축 도살 및 기타 유사한 단순 작업 등 단순 작업.

UAE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은 2017년 Cabinet Resolution 제25호 (4)조에 따라 "Made in UAE" 표시 규정으로 현지 가공, 제조 또는 운영을 통해 제품 가치의 최소 40%를 달성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Saudi Ministerial Decision 8352 호 1442 H (2020년에 해당)의 원산지 규정 (이하 "**사우디 원산지법**")은 사우디에서 제조되고 걸프협력회의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규정합니다. 사우디 원산지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율이 40%이고 제조 시설 직원의 25% 이상이 KSA 국민인 경우 제조된 제품의 원산지는 사우디로 간주됩니다.

관세청은 아직 걸프협력회의회원국 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외국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결정하는 국내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Royal Decree 제23호 1432호 (2011년에 해당)에 따라 개정 Revised Kyoto Convention 을 비준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산지 규정 심사에 Revised Kyoto Conventio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걸프협력회의회원국과 달리 비특혜 대우를 받는 외국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 당국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와 같은 일부 현지 당국에서는 모든 외국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쿠웨이트

쿠웨이트에는 원산지 규정을 명시한 특정 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쿠웨이트는 원산지 결정을 위해 일련의 법률 및 협약을 따릅니다. 즉, 쿠웨이트의 원산지 규정은 Revised Kyoto Convention, GCC Economic Agreement 및 산업통상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일반 규칙에 관한 2020년 Kuwaiti Ministerial Decision 제(193)호(이하 "쿠웨이트 원산지 증명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쿠웨이트 원산지 증명법 제5조에는 쿠웨이트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제품을 결정하는 여러 규칙이 나열되어 있으며, 커피 원두의 로스팅 및 분쇄 등 제품의 실질적인 제조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의 예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수입품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2020년 Minister of Finance's Resolution 제(7) 호는 카타르의 원산지 규정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입니다(이하 "**MOF의 결의안**"). MOF의 결의안은 원산지 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협약을 참조하는 조항을 강조합니다.

MOF 결의안은 카타르와 관세율 특혜를 규정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해당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Revised Kyoto Convention을 비준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만

오만에는 원산지 규정을 규제하는 독립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대신 현지 제품에 대해 40%의 부가가치율 요건을 적용하며, 현지 생산자는 50%의 현지 소유 요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GCC 협력회의 경제 협정과 GCC Economic Agreement에 따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오만 현지 제품에 오만 현지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Omani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Investment Promotion는 제품의 최종 이전에 현지 인력이 20% 이상 투입되면 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62호 Regulation No. 62 of 2023 on Regulating the License for Using Logo for Local Products (현지 제품 로고 규정)를 따른 것입니다.

오만은 또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양자 간 협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싱가포르 제품은 35%의 부가가치율만 달성하면 됩니다. 한편,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경우 오만은 Revised Kyoto Convention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바레인

바레인은 오만과 마찬가지로 Revised Kyoto Convention을 적용하여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 규정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결정합니다. 자국산 공산품이란 걸프협력회의회원국에서 해당 상품을 제조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생산 완료 시 최종 가치의 40% 이상인 제품을 의미합니다.

April 2023

[Rules of Origin in the GCC States - Rules of Origin in the GCC States \(tamimi.com\)](https://tamim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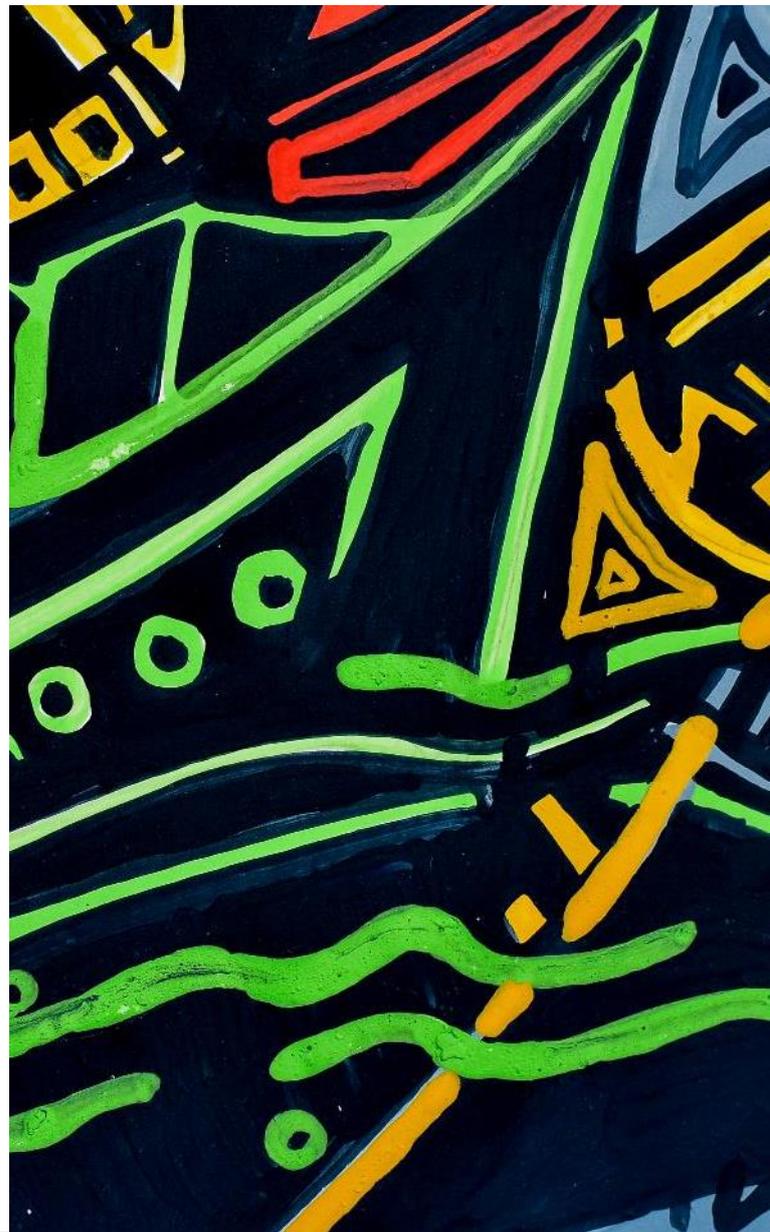
[KSA] Establishment of Special Integrated Logistics Zon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8년 10월10일에 발행한 (Royal Decree No. A/17 dated 01/02/1440H) 법령 제17호에 준하여 KSA 내 특별 통합 물류 구역 (Special Integrated Logistics Zones) (이하 "SILZ") 설립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SILZ에서 설립 및 운영되는 사업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SILZ은 킹칼리드국제공항 (KKIA) 에 설립되었고, 2022년 10월 31일에는 교통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SILZ의 개시를 발표하여 투자자들이 SILZ에서 회사설립 및 운영이 가능함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SILZ 를 통해 세금 및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물품의 유지, 수리, 가공, 수정, 개발, 조립 및 분류
- 단순 제조 공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품 분류, 포장, 재포장, 거래, 유통, 취급 및 사용
- 물품의 수입, 수출 및 재수출
- 부가가치 서비스, 물류 서비스 및 애프터서비스
- 재활용 폐기물 및 전자 폐기물

SILZ 내에 설립하는 기업의 경우, 설립 후 첫 5년간 본토에 설립된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 사우디국적자고용 (Saudisation)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보다 완화된 사우디제이션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ebruary 2023

Establishment of Special Integrated Logistics Zones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 Al Tamimi & Company

Navigating the Saudi Construction Law landscape and Amicable Dispute Resolutions



[KSA] The Saudi Construction Law Saga; a Tap in the 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s – Part. 1

서론

사우디는 현재 석유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여 경제의 다각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여러 메가 프로젝트의 동시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사우디 건설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많은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하 사우디의 법률 시스템 및 건설계약의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건설계약 참여자들의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적 고려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법률 시스템

사우디 법원은 선례에 구속되지 않지만 대체로 상급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적 관점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재하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샤리아 원칙이나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구속됩니다.

중요한 입법으로는 정부 입찰 및 조달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조달법”)이 있습니다. 정부조달법은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조달사업에 적용됩니다. 사우디 비전 2030 관련 사업중 대다수가 정부 및 정부소유 회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조달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형태

현재까지는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건설만을 수행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점 더 그 계약형태가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프로젝트와 더불어 상업시설의 개발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공업 시설의 경우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 및 조달을 함께 수행하는 EPC, 설계, 조달, 감리를 함께 수행하는 EPCM 계약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에너지 및 교통 시설의 경우에는 PPP 계약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 참여자들의 유동성 (liquidity)

사우디 건설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발주자나 건설사들이 존재합니다. 발주자의 자금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하수급인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 자주 포함되는 조건부 지급 조항은 하수급인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조건부 지급 조항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건부 지급 조항은 사우디법상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건부 지급 조항은 그 문언상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시공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의적인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할 경우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면 하수급인으로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질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사유로 인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조건부 지급 조항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으로서 조건부 지급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도급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로는 (i) 하수급인이 시공자에게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및 (ii)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하수급인에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조항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부 지급조항이 적용되는 최소 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하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공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건부 지급 조항의 효력이 소멸하는 날짜 (long stop date) 를 정함으로써 그 날짜 이후에는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수급인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공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내역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시, (i) 이러한 직접 지급은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 (ii)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iii) 발주자는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만큼 시공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할 것입니다.



March 2023

[The Saudi Construction Law Saga-Pt. 1 - The Saudi Construction Law Saga; a Tap in the 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s - Pt. 1\(tamimi.com\)](https://www.tamimi.com)

[KSA] The Saudi Construction Law Saga; A 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 – Part. 2

서론

사우디 건설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바, 본 Part2에서는 건설계약상 위험의 배분, 공사 관리 및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배분

건설계약상 위험의 배분은 건설계약 참여자들의 유동성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은 (i)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하고, (ii)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사우디에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우디 건설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시공자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조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시공자들은 사우디 건설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많은 계약상 위험이 배분되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가 입찰 단계에서 지반여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상 지반여건에 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에게 지리적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공자가 부정확한 지리적 정보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시공자들이 계약체결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암반이나 지하수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시공자들에게 상당한 추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간과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 설계 승인과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건축사무소는 설계와 관련된 사우디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설계승인을 받는데 많은 시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국내 시장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축 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기단계부터 발주자와 시공자가 건축사무소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공자에게 많은 위험이 배분된 경우 발주자가 계약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건설계약이 반드시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재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 경우에 지연배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게 될 것인바, 이는 시공자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공사진행을 더욱더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즉, 지연배상금이 공제된 경우 (특히 공제액이 약정한도액에 다다른 경우) 시공자는 공사 진행을 신속하게 할 유인을 상실하게 되며,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지연배상금의 공제는 공사의 품질, 기간 및 공급망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최적의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주자는 적어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약상의 권리 행사를 늦추거나 일부 권리를 유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공자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기준수에 대한 보상 등 신속한 공사진행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시공자에게 불리한 공사계약은 발주자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자의 과도한 위험 부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위험이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하게 배분되고 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사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사 관리

사우디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이 적용될 경우에는 발주자에 의하여 선임된 엔지니어에 의하여 공사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공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i) 공사변경 클레임을 부인한 사례, (ii) 공사지연 및 비용 초과를 발생시키거나 이에 기여한 발주자의 방해행위를 무시한 사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시공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인식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는 엔지니어가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시공자가 엔지니어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엔지니어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공사계약이 계약에서 정한 엄격한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엔지니어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시공자의 클레임에 대한 결정과는 별도로, 엔지니어는 시공자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공기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해결

다른 국가에서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자들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분쟁해결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이 첫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협상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사우디에서는 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정보를 협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시 정보비공개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제공된 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우디 상사법원은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의 협의를 소송제기의 사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협의는 분쟁해결을 위한 우호적 협상, 조정, 화해나 기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재조항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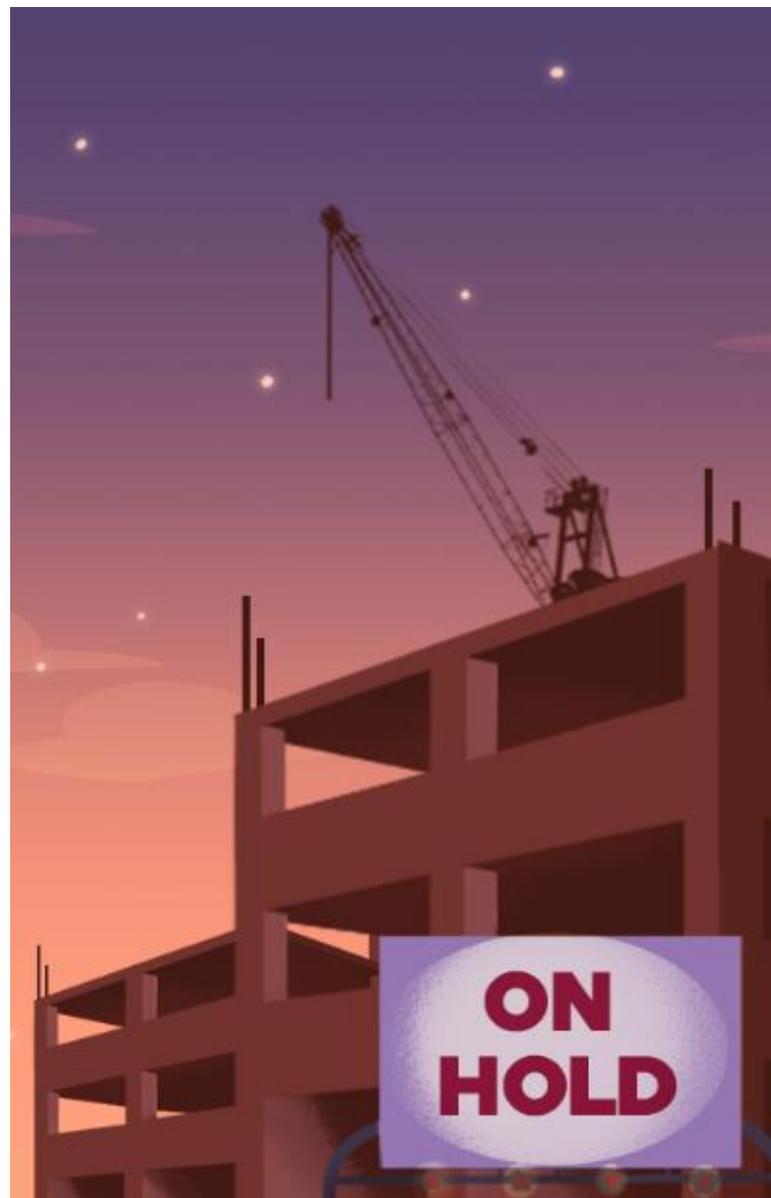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은 현재로서는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기술적인 분쟁에 있어서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법률가인 전문가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결정이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되는 경우에 더욱더 주의를 요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도 사우디에서 점차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상사중재원 (Saudi Center for Commercial Arbitration) 은 조정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2020년 5월 5일 UN 조정협약의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중재는 건설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이용되는 분쟁해결방법입니다. 건설중재는 건설 산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재인이 선임될 경우 더욱더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조달법은 정부기관 관련 분쟁의 해결에 중재절차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UNCITRAL 중재법을 모델로 한 사우디 중재법의 제정 이후에 더욱더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상사중재원의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재의 활발한 이용과 더불어 사우디법원 소송도 건설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발주자와의 분쟁은 상사법원이 주로 관할권을 가지며 정부 발주자와의 분쟁은 행정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리야드 협약은 아랍국가내 법원 판결이 사우디내에서 집행가능하고, 사우디법원 판결이 다른 아랍국가내에서도 집행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March 2023

[The Saudi Construction Law Saga-Pt. 2 - The Saudi Construction Law Saga; A 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 - Pt. 2 \(tamimi.com\)](https://www.tamimi.com)

Key Issues to note when seeking to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amicably

본 글에서는 건설 분쟁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해결을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논의합니다.

공사 중단 혹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를 지원하는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적인 재무적 지원
-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
- 클레임 포기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분쟁에 돌입하는 경우, 선의로 공사 진행을 지원한 발주자는 추후 클레임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시공자에게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공자에 대한 지급

-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들은 시공자의 현금흐름 이슈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만료 시까지 미루어 두기보다 문제 발생 시점에 “실시간”으로 논의하는 것이 계약의 틀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시간”으로 분쟁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은 다수의 법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영국, 호주, 싱가포르 및 홍콩 건설조정 (adjudication) 절차의 주된 목적입니다.
-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계약범위 밖의” 지급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안이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회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추가 선수금 지급 (담보 보증 추천) 이 초과 기성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초과 기성은 계약절차 내에 있을 수 있으나, 분쟁시, 초과기성은 발주자/엔지니어가 공사진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추가 선수금 지급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입찰서 부록 (appendix to tender) 에 선수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변경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계약변경은 계약변경을 규정하는 계약조항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계약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추가 선수금을 합의할 때, 선수금이 회수되는 조건을 검토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선수금의 회수를 위해 중간기성에서 이를 공제할 때, 이 금액이 중간기성의 큰 부분을 차지할 때의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추가 선수금 회수 방안으로 유보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선수금의 차감으로 유보금의 액수가 줄어들면, 시공사는 a) 하자보수 비용을 충당하고, b) 잔여작업을 수행하여 유보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추가 금액지급을 “대여금”이라 흔히 부르지만, ‘대여금’의 반환에 합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가피하게 ‘대여금’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여금의 조건이 이자와 그 회수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계약범위 밖의 대여금 합의 또는 기타 합의를 할 때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추가 합의가 기본 계약의 중재합의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

- 시공사의 공사금 미지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할 명시적인 계약상 권리 없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FIDIC 표준계약조건은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조항을 허락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시공자가 지급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명 하수급인에게로 국한됩니다.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 1999년 FIDIC (Red Book) 제5.4조의 절차가

현지 하수급인에게까지 확장되고 향후 하수급인으로서의 지급을 허용하도록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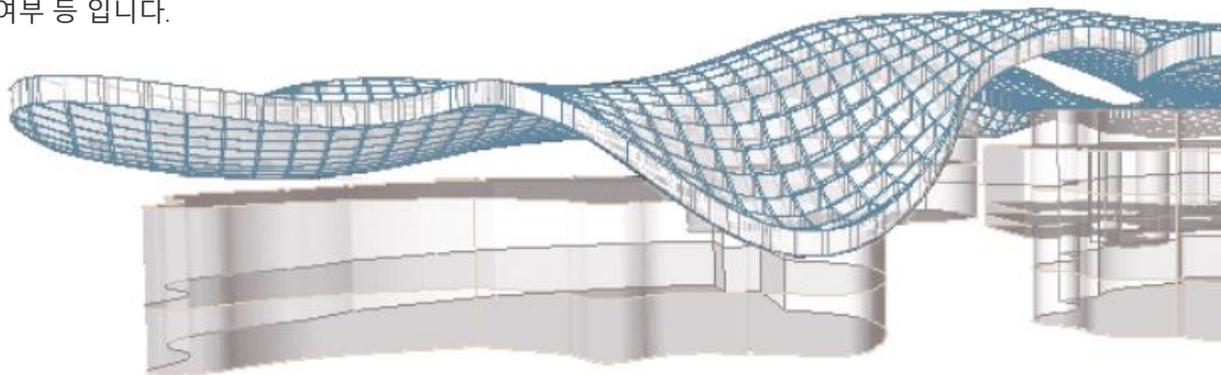
- 또한 하수급인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overhead and profit)를 지급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는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타 쟁점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하수급인에 대해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와 하수급인이 발주자 혹은 엔지니어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조항의 포함 여부 등입니다.
- 추가 선수금 회수 방안으로 유보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권장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선수금의 차감으로 유보금의 액수가 줄어들면, 시공사는 a) 하자보수 비용을 충당하고, b) 잔여작업을 수행하여 유보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추가 금액지급을 “대여금”이라 흔히 부르지만, ‘대여금’의 반환에 합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불가피하게 ‘대여금’으로 진행되는 경우, 대여금의 조건이 이자와 그 회수 조건을 명시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계약범위 밖의 대여금 합의 또는 기타 합의를 할 때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추가 합의가 기본 계약의 중재합의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

- 시공사의 공사금 미지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할 명시적인 계약상 권리 없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FIDIC 표준 계약 조건은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조항을 허락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시공자가 지급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명 하수급인에게로 국한됩니다.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 1999년 FIDIC (Red Book) 제 5.4 조의 절차가 현지 하수급인에게까지 확장되고 향후 하수급인으로서의 지급을 허용하도록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하수급인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overhead and profit) 를 지급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는 하수급인의 공사 수행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타 쟁점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하수급인에 대해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하수급인이 발주자 혹은 엔지니어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조항의 포함 여부 등입니다.

지연 vs 클레임 포기

- 클레임 발생 시 해당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무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Society of Construction Law의 공기지연 및 생산성저하 지침 (Delay & Disruption Protocol) 이나 NEC 와 같은 계약조건의 형태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FIDIC 또한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는데, 통지기간 및 상세 클레임 통지 클레임의 결정 그리고 공사 도중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AAB 절차를 제공합니다.
-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완공하려는 목적으로 기성에서 클레임을 공제하는 것을 공사 마지막까지 연기하는 경우, 발주자는 향후 해당 클레임을 할 권리를 유보하고 추후 클레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발주자는 시공자에 의해 제기된 클레임을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상업적인 교착 상태의 해소를 위해 임시적이라고 서술하여 허용하는 것은 주의할 문제입니다. 수락한 사항을 나중에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향후 임시적으로 허용한 동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반대청구를 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문구와 함께 동 클레임을 허용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분 완공

- 흔하지는 않지만, 긴급하게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이 완전히 완공되기 전에 부분 완공 혹은 전체 완공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 FIDIC 계약조건은 부분 인수를 허용하지만, 부분 인수 메카니즘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에만 동 조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FIDIC 계약조건에서 부분 인수 절차는 건축물의 특정한 부분만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발주자가 건축물의 일부 층을 인수한다고 서면으로 서술하였는데, 사실상 그 층을 사용하려면 건축물의 다른 부분도 사용해야한다면, 실제 사용된 모든 구역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공사목적물이 실제로 완공되기 전에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부분을 인수하는 것은 하자보수의 범위 및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에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국면에서 시공사는 인수확인서의 발급을 두고 작은 결함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삭감

-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주자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계약에서 업무 범위의 일부를 삭감하고 그 부분을 제3자를 선임하여 또는 직접 완공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계약이 삭감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계약은 삭감을 공사변경으로 처리되도록 허용하지만, 제3자에

의해 또는 발주자가 직접 삭감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공사와 합의없이 공사를 삭감하고 제3자에게 맡기거나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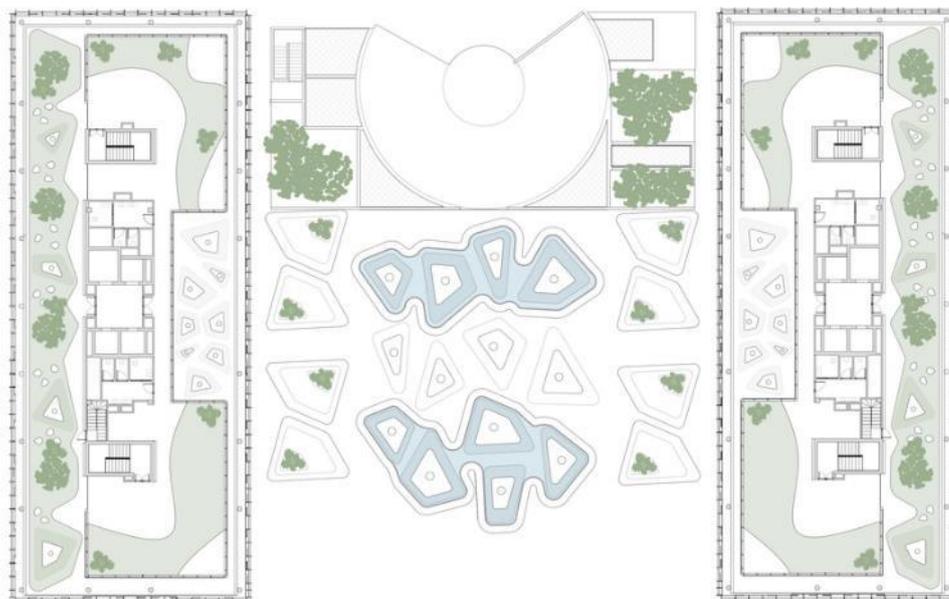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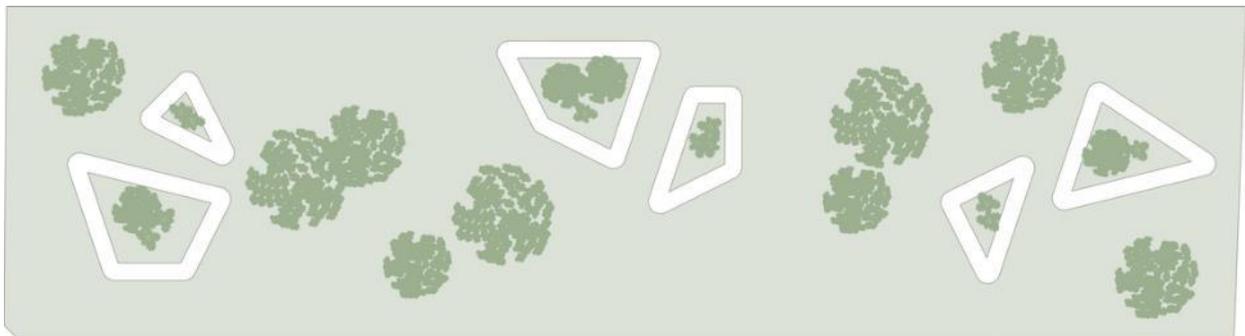
- 삭감시, 삭감된 공사와 나머지 공사의 상호관련에 대한 위험이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 및 시공계약에서 단일주체 책임을 깨는 것이 추후 기존의 시공자와 새로운 시공자, 각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을 기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서면합의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계약 절차 내에서 작동하게끔 하고자한다면 계약의 관련 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공사변경 또는 엔지니어의 결정 또는 지시에 대한 계약적 요건은 합의된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계약적 요건과 다를 것입니다. 정확한 계약요건들을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 유사하게, 당사자들이 발주자 또는 엔지니어가 관련 지시/합의를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적으로 줄 수 있는지) 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자체를 변경할 권한은 발주자에게 유보되어 있지만 특별한 통지를 할 권한은 엔지니어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이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별도의 계약으로 대여금을 합의한다면, 그 합의는 명시적으로 기초계약에서 중재합의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 고 서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는 추후 중재에서 대출계약의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고 별개의 절차로 현지 법원 절차에 의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가 명시적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 걸프 국가에서는 'Without prejudice' 원칙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추후 소송/중재 절차에서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에는 사실적/중립적인 진술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당사자들의 승인/수락을 시사하지 않는 상업적 기준으로만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기밀유지협약 (NDA) 이 추가적인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June 2023

[Key Issues to note when seeking to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amicably - Key Issues to note when seeking to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amicably \(tamimi.com\)](https://www.tamimi.com)

Financing the Future: Sustainable Loans Meet ESG Trends in the Region



Sprouting Seeds: Green Financing and ESG Trends in the UAE

UAE 정부는 중동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200조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UAE 정부는 UAE의 녹색 아젠다 2015 - 2030, UAE의 국가 기후 변화 계획 2017 - 2050 및 UAE의 2050년까지의 넷제로 경제 전략 등 다양한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UAE 정부는 지속 가능 금융 협력 공동 성명(Collaboration on Sustainable Finance in the UAE)에서 자금 조달과 자금 지원은 '저탄소 및 지속 가능한 미래' 달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규제기관 및 투자자들도 녹색 대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이하 "ESG") 경영 및 금융 시장의 확장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색 대출의 부상: 지속 가능한 투자

UAE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녹색 프로젝트가 각광받고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GCC 국가에서 발행된 녹색 및 지속 가능 채권 및 Sukuk 약 USD 85억 달러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이 기존의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녹색 금융' 원칙에 기반한 대출로 재구조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규모가 커지는 녹색 채권 시장에도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및 관련 규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녹색 금융 표지 제도는 금융상품에 녹색 표지(Labelling)를 부여하는 제도로, 적극적인 녹색경제활동으로의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상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출시장협회(Loan Market Association)는 지난 2018년 12월 녹색 대출상품의 개발 촉진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제정한 원칙 Green Loan Principles(이하 "GLPs")을 발행하였고 2019년에는 Loan Syndications and Trading Association과 공동으로 Sustainability-Linked Loan Principles(이하 "SLLPs")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대출에 배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며, 자금 사용, 프로젝트 평가 및 자금 관리 과정(경우에 따라 GLPs), 대출자의 전반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 전략과의 관계 및 목표 설정(경우에 따라 SLLPs)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녹색 대출상품 투명성이 높아지고 녹색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투자자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13일, 유럽 은행 당국(European Banking Authority, 이하 "EBA")이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을 발표하여 기존의 금융감독 프레임워크에 ESG위험과 기준을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금 조달, 사후 자금의 배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외부검토의 일반화를 제시할 뿐 만 아니라 그린워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를 더욱 엄격히 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설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UAE 정부는 Abu Dhabi Securities Exchange (이하 "ADX") 또는 Dubai Financial Market (이하 "DFM") 에 상장사에 ESG 정보 공시 발행을 요구하였고,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환경 (녹색 금융을 포함한), 사회, 경제 및 지배구조 분야에 관한 장기 전략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SG 공시는 또한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및 Abu Dhabi Global Market (이하 "ADGM") 의 등록 기관에 의해 발표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이하 "ADGM Framework") 에도 도입되었습니다. ADGM Framework에 따르면, ADGM에 설립된 회사들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기업 형태 예외)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ADGM Framework은 'ADGM 녹색 펀드', 'ADGM 기후 전환 펀드', 'ADGM 녹색 채권' 및 'ADGM 녹색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 등 다양한 녹색 금융 상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금융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녹색 금융 상품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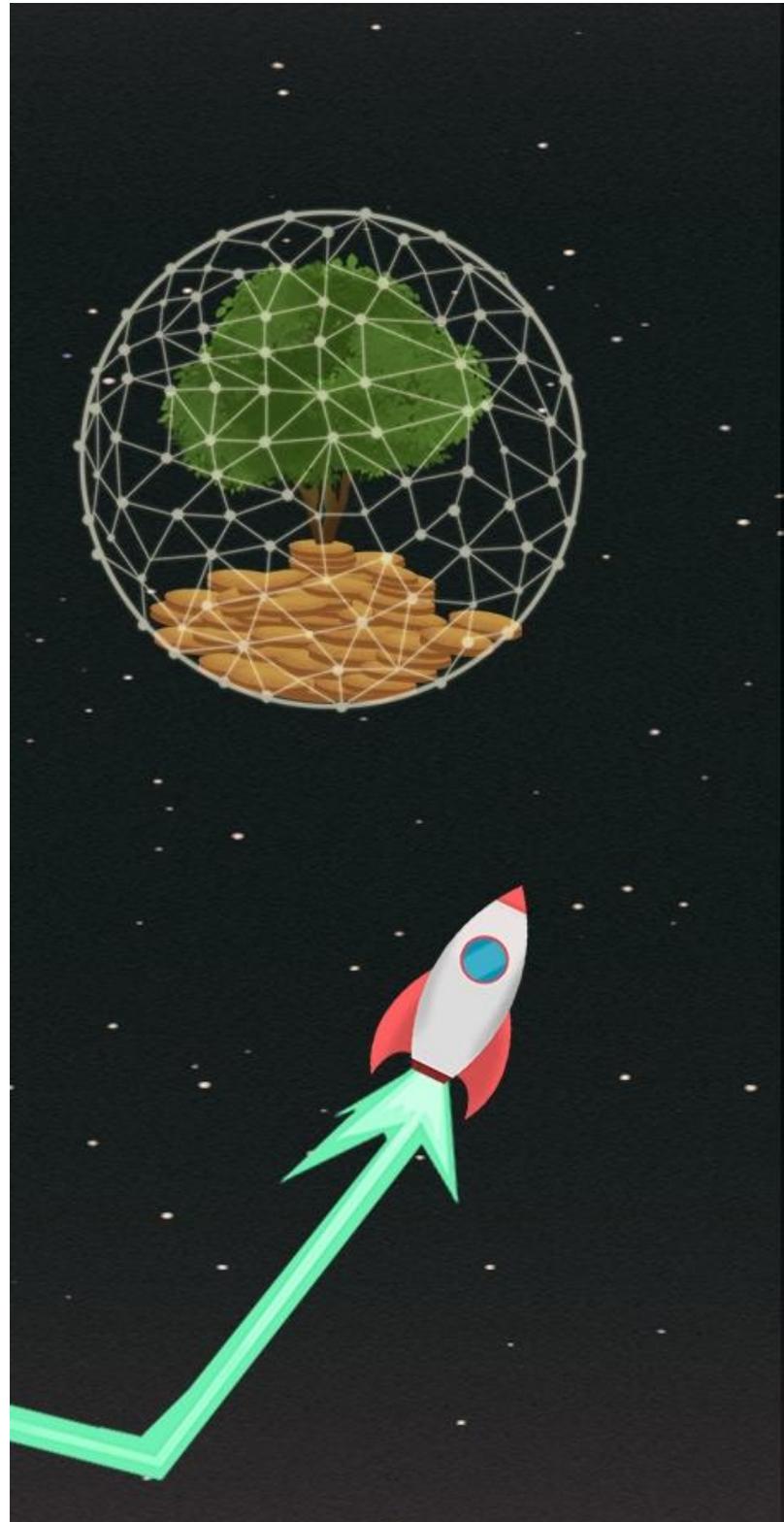
| ADGM 녹색 금융 상품 | 가입 조건 |
|--|--|
| ADGM 녹색 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 관련자산에 투자 - 녹색 자산 (Green Asset) 은 일반적으로 '파리협정 준수 벤치마크 (EU Paris-aligned Benchmark, EU-PAB)' 에 명시된 녹색 분류체계 이나 녹색 라벨링을 기준으로 평가됨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및 유럽 연합 지정한 녹색 분류체계도 포함 |
| ADGM 기후 전환 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자산화 (비녹색 자산을 녹색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 에 투자 - 녹색 자산화 자산은 (i) 기후 전환 분류와 일치하는 자산, (ii) 공개된 넷제로 타겟 및 전략을 가진 기관이 발행한 주식 및 부채, (iii) 녹색 채권 및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 (iv) 녹색 부동산 자산 및 인프라, (v) 기후 전환 벤치마크를 트래킹하는 자산으로 정의됨 |
| ADGM 녹색 채권 및 ADGM 녹색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은 (i) ADGM에서 제공, (ii) ICMA 녹색 채권 또는 지속 가능성 연계 채권 원칙 (또는 동등한 프레임워크) 을 준수, (iii) 제3자 검토 및 검증 필요 |



2022 UAE 현지기업 ESG동향

1. ADX는 Sweihan PV Power Company (아부다비의 최초 대규모 태양광 IPP 소유자)가 발행한 7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녹색 채권 상장
2. 중앙 냉방공사 (Tabreed)는 녹색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녹색 프로젝트 (냉각 체계 건설, 획득 및 운영 등) 및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 및 폐수 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하기 위한 녹색 채권 및 대출 발행
3. 아부다비 Masdar Green 부동산 투자 신탁은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을 위한 부동산 자산 개발을 위해 First Abu Dhabi Bank PJSC와 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약정 체결

더 주목할 점은 사회적 및 윤리적 이익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Sharia 컴플라이언스는 지속 가능성 및 녹색 금융 시장에도 잘 융합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발표된 PwC 보고서 'Islamic Finance and ESG Investing; Ready for Convergence?'에 따르면 이슬람 금융 상품은 DFM, ADX 또는 ADGM 정책 하에서 쉽게 ESG 적합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일례로 최근 두바이 이슬람 은행 PJSC도 녹색 및 사회적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습니다.



February 2023

[Sprouting Seeds: Green Financing and ESG Trends in the UAE - Sprouting Seeds: Green Financing and ESG Trends in the UAE \(tamimi.com\)](https://www.tamimi.com)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녹색, 사회 및 지속연계 대출

아시아태평양대출시장협회 (Asia Pacific Loan Market Association; APLMA), 대출시장협회 (Loan Market Association; LMA), 대출연합거래협회 (Loan Syndications and Trading Association, LSTA) 에서는 녹색 대출 원칙 (Green Loan Principles), 사회 대출 원칙 (Social Loan Principles), 그리고 지속연계 대출 원칙 (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 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각 원칙의 기본적인 특성과 주요 차이점 등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녹색 대출 (Green Loans)

녹색 대출 시장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 대출 원칙에 따르면, 녹색 대출은 네 가지 핵심 구성 요소와 부합하는 새로운 또는 기존의 적합한 녹색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증하는 대출 도구 및 조건부 시설 (예, 보증 라인 또는 신용장과 같은) 의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녹색 프로젝트의 정의는 분야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녹색 대출 원칙은 녹색 프로젝트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녹색 대출은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구성 요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a) 자금 용도: 녹색 대출의 기본 결정 요인은 대출

자금을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금융 문서와 필요한 경우 마케팅 자료에서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b) 프로젝트 평가 및 선택 과정: 녹색 대출의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차입자는 다음 정보를 대출자(들)에게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i) 녹색 프로젝트의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 (ii) 차입자가 프로젝트를 녹색 프로젝트의 적격 범주에 부합시키기 위해 채택하는 방법, 및 (iii)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

c) 자금 운용: 녹색 대출의 자금은 제품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트래킹이 되어야 합니다.

d) 보고: 차입자는 자금 사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연례적으로 유지하고 녹색 대출이 완전히 인출될 때까지 (또는 리볼빙 크레딧 시설의 경우 대출 만기까지)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 대출 (Social Loans)

사회 대출 시장은 주로 신용 시장에서 사회적인 이슈의 긍정적인 해결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회 대출은 사회 대출 원칙에 따라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하는 사회 프로젝트 (일반적으로는 클린 금융수, 위생, 교통, 에너지, 기본 통신 등과 같은 분야)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증하는 대출 도구 및 조건부 시설 (예: 보증 라인, 신용장과 같은)로 정의됩니다.

사회 대출 역시 녹색 대출 원칙과 유사한 네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따라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속연계 대출 (Sustainability-Linked Loans)

지속연계 대출은 지속가능성 (환경, 사회 및/또는 거버넌스 측면)에 기여하고 차입자가 이에 기여하도록 자금을 조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 대출 및 사회 대출과 대조적으로, 지속연계 대출은 차입자가 미리 정의된 SPTs (지속가능성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 특성이 다를 수 있는 대출 도구 및/또는 조건부 대출 시설 (예: 채권, 보증 또는 신용장)일 수 있습니다. 차입자의 지속가능성 성과는 미리 정의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 (이하 "SPTs")에 따라 미리 정의된 주요성과지표 (이하 "KPIs")를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대출 계약에 따라 차입자가 미리 정의된 KPIs에 따라 미리 정의된 SPT를 충족하는 경우 대출 계약에 따른 마진이 줄어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일부 경우에는 강력한 근거가 제공된 경우 마진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립적인 범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속연계 대출은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구성 요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a) KPIs의 선택: 지속연계 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의 지속 가능성 프로파일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며, 대출 조건을 차입자의 성과에 맞게 조절하여 기여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 이상의 지속 가능성 KPIs를 사용하며 이것은 외부/내부적일 수 있습니다. KPIs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i. 차입자의 전체 비즈니스에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고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
- ii. 일관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측정되거나 측정 가능한 것
- iii. 가능한 한 외부 참조나 정의를 사용하여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벤치마킹이 가능한 것

KPI(s)의 명확한 정의는 차입자가 제공하며 해당 범위 또는 매개 변수, 계산 방법, 기준의 정의 및 가능한 경우 산업 표준 또는 산업 동료에 대한 벤치마킹을 포함해야 합니다.

b) SPTs의 조정: KPI당 SPTs의 조정 프로세스는 지속연계 대출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PTs는 선량한 의도로 설정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한 항상 관련성과 야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 각 KPI에 대한 연간 SPT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c) 대출 특성: 지속연계 대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선택된 미리 정의된 SPTs가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 결과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대출 계약에 따라 차입자가 미리 정의된 KPIs에 따라 미리 정의된 SPT를 충족하는 경우 대출 계약에 따른 마진이 줄어들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이며, 일부 경우에는 강력한 근거가 제공된 경우 마진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립적인 범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d) 보고: 차입자는 대출에 참여하는 대출인에게 적어도 연례적으로 SPTs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SPTs가 그들의 비즈니스에 여전히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연계 대출 (SLL) 의 경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영향의 시기를 개요로 하는 지속 가능성 확인 성명서와 확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e) 검증: 차입자는 SPT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일자/기간에 대한 외부 감사인과 같은 자격 있는 외부 검토자에 의한 각 KPI의 SPT 수준에 대한 독립적이고 외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며 대출의 마지막 SPT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경제적 특성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점:

녹색 및 사회 대출은 주로 대출 자금이 어떠한 녹색 또는 사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지, 각 원칙에서 제시하는 핵심 기준을 잘 충족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는 반면, 지속연계 대출과 관련된 초점은 차입자가 미리 정의된 SPTs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 를 달성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지속 가능성 성과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자금이 실제로 차입자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사업 활동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June 2023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Linked Loans \(tamimi.com\)](https://www.tamimi.com)

Al Tamimi & Company News



Al Tamimi & Company 뉴스

알타미미, ADNOC Gas plc IPO 자문

알타미미는 ADNOC Gas plc (ADNOC Gas) 의 기업 공개 (이하 “IPO”) 와 아부다비 증권거래소 (Abu Dhabi Stock Exchange, 이하 “ADX”) 로의 상장 업무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동 IPO는 대략 AED 91억 (USD25억 규모) 에 달하는 것으로 ADX의 가장 큰 상장이자, 올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IPO로 기록되었습니다.

알타미미는 Gibson, Dunn & Crutcher LLP와 ADNOC Gas 의 법률 자문사로 선임되어 복잡한 IPO의 법적, 규제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알타미미 팀은 UAE에서 IPO에 적용되는 모든 법과 규정에 대해 ADNOC Gas 에 자문을 제공했고, UAE 증권선물위원회와 ADX와의 주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습니다.

알타미미, 상업, 기업 법무 및 M&A 부문 변호사 영입 – Nicholas Watson 변호사, Suhail Mirza 변호사

알타미미는 Nicholas Watson 변호사와 Suhail Mirza 변호사를 상업, 기업 법무 및 M&A 그룹에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습니다. 25년 이상 국제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과 수년 간 리더십의 경험을 가진 Nicholas 변호사는 알타미미의 상업, 기업 법무 및 M&A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 헤드로서 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Suhail Mirza 또한 알타미미 두바이 사무소의 상업, 기업 및 M&A 법무 부문에 합류했습니다. Suhail 변호사는 15년 동안 UAE에서 M&A, 인프라 및 테크놀로지 (핀테크 디지털 결제 및 전자 상거래 부문) 거래에 자문을 해왔습니다. Nicholas 변호사와 Suhail 변호사의 영입으로 알타미미는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팀이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타미미, 해상법 전문가 Wesley Wood 파트너 변호사 영입

알타미미는 지난 2월 해상법 전문가인 Wesley Wood 변호사를 운송, 물류 및 항공 부문의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여 해상팀의 역량을 특히 강화하였습니다. 13년 이상 해상 및 국제 통상 부문에 중점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온 Wesley 변호사의 영입으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팀이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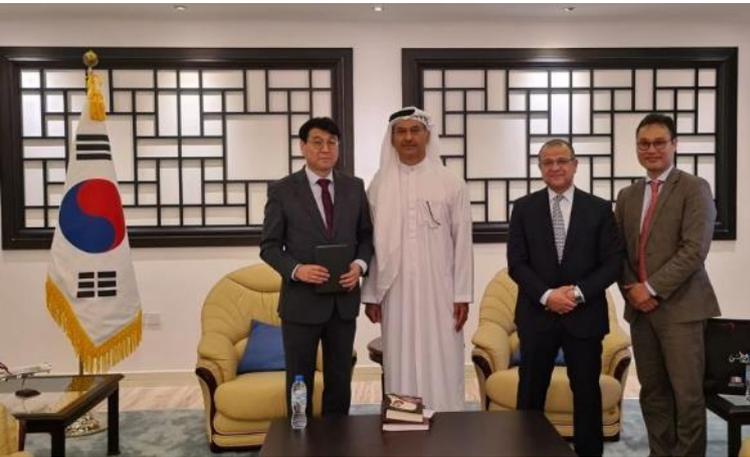
알타미미, 중동 지역 최대 규모 로펌에 선정

법률 전문 매체인 Law.com이 2023년 3월 1일 기준 중동 지역 로펌들의 변호사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타미미는 중동 지역에 총 378명의 변호사를 보유하여 변호사 수 기준 최대 규모 로펌에 선정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파워하우스로 잘 알려진 알타미미의 변호사 수는 다른 경쟁 로펌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알타미미, 2023년 상반기 Mergermarket M&A Top 20 MEA 지역 법률 자문가에 선정

알타미미가 인수합병 전문 정보업체, Mergermarket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 M&A 법률 자문 상위 20위 자문사 리스트 (거래건수 기준) 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orea Group 뉴스



알타미미의 Essam 변호사, Omar 변호사, 하지원 변호사, 두바이 총영사관 방문

알타미미는 지난 1월 30일, 알타미미의 설립자이자 CEO인 Essam 변호사, Transport & Logistics 그룹과 한국팀 헤드인 Omar 변호사, 한국팀 총괄 하지원 변호사는 두바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지난 국빈방문 때 체결된 40여건의 MoU들, UAE 로의 투자, 헬스케어 분야의 협력 방안,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옴 프로젝트에 대하여 문병준 총영사님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 한국팀을 보유한 알타미미는 UAE의 한국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 송형민 변호사, 박인혜 연구원, 김유라 대리, 중동 주요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고문변호사 및 공인통역에 선임

알타미미 한국팀은 중동 주요 국가들의 한인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두바이 총영사관 및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에 고문변호사, 송형민 변호사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셋다 총영사관의 고문변호사에 지속적으로 선임되어 우리 교민 및 기업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박인혜 연구원과 김유라 대리 또한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공인통역사로 선임되어 한인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하지원 변호사,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단 온라인 상담에서 법률 자문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참관 하에 개최된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주요 내빈으로 초청되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단 온라인 상담에서 중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법인 설립, 유통 계약 체결, 제품 등록 및 관련 인허가 취득 등 법률상 요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2년 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두바이 수출인규베이터 자문위원에 위촉되어 법률 및 규제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송형민 변호사, Standard Chartered 중동지역 한국데스크 주최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

알타미미 리야드 사무소에 상주하는 송형민 변호사는 지난 3월 2일 Standard Chartered 중동 지역 한국데스크 주최로 바레인에서 개최된 “금융 경제 법률 세미나”에 연사로 초대되어 “사우디 아라비아의 Regional Headquarters 프로그램 (RHQ 프로그램)을 비롯한 우리 기업 진출 시 주목할 주요 법적 요건 및 규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우리 건설사들이 참여한 동 세미나에서 RHQ 프로그램이 우리 기업의 사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L TAMIMI & CO.

Regional Headquarters Programme in KSA

Hyungmin Song, Senior Associate
Korea Group
Al Tamimi & Company

알타미미 한국팀,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17일, 해외건설협회 후원 하에, 김·장 법률사무소와 알타미미는 “사우디 . 중동 진출의 새로운 전략: 최신 법률 및 세무 리스크 관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세미나 홀에서 대면 세미나로 진행된 동 세미나에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와 송형민 변호사, 조세그룹의 스라즈 변호사, 분쟁해결그룹의 오마르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세법, 분쟁절차 및 주요 이슈 △쿠웨이트 세법 개요 및 주요 이슈 △사우디 조인트벤처 계약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법인설립 절차, 최신 규제 동향 △UAE의 건설 프로젝트 관련 주요 이슈와 분쟁 사례 △UAE 및 중동 프로젝트 수행 시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여, 중동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기업들의 법적 리스크와 이슈들을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강연을 담당한 하지원 변호사와 송형민 변호사는 UAE와 사우디 아라비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현장에서 그리고 이후 이메일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140명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동 세미나는 중동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주최한 ‘Mid-year Leadership Summit’에 패널리스트로 참여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3월 3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된 세계한인법률가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Mid-year Leadership Summit의 일환으로 개최된 커리어 멘토링 세미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오클랜드법대 한인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기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타미미 보험팀, 한국 보험 관계사들과 라운드테이블 미팅 진행

지난 3월 24일, 알타미미 한국팀은 보험팀과 함께 한국 보험 관계사들을 DIFC 사무소로 초대하여 보험팀의 아난드 변호사는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보험 규제 동향을 업데이트 하고, 걸프 지역의 보험 산업 부문의 주된 이슈들, 우리 기업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팀 헤드인 오마르 변호사, 보험팀 사커 변호사와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와 박이세 변호사도 미팅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 관계자들을 환영하고 미팅을 지원했습니다.



알타미미,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 세미나 개최 (2023. 4.17)

알타미미 한국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공동 웨비나 개최

지난 6월 22일, 알타미미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해외건설협회의 후원 하에, “2023 중동 법률 이슈 체크: 금융 및 건설 분야”를 주제로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동 웨비나에서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와 बैंकिंग 및 금융그룹의 아마드 변호사와 미타 변호사는 △ 이슬람 금융의 주요 기법인 이자라 (Ijarah), 무라바하 (Murabaha), △ 이슬람 채권 (Sukuk) 발행구조, △ 해외대주단이 경험하는 주요 이슈를 논의하며 한국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들과 프로젝트 입찰 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중동 지역의 최근 동향 등을 소개했고, 한국팀의 김승현 변호사와 박이세 변호사는 중동 지역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 기업들이 흔히 경험하는 이슈인 건설 계약의 contractual time bar 와 시효기간에 대한 중동 법의 법리를 논의하고, 중재비용과 이자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의 관련 법 조항들을 소개하며 중재 시 유의할 쟁점들을 논의했습니다. 동 웨비나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최대 200명 가량이 웨비나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3 중동 법률 이슈 체크 금융 및 건설 분야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오후 3:00 - 4:50 (한국 시간)
오전 10:00 - 11:50 (UAE 시간)

중동 로펌 Al Tamimi & Company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유의하여야 할 금융 및 건설 분야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 및 한국 기업의 이슬람 금융 활용 가능성 및 법적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이슬람법의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유의할 사항 및 최근 트렌드를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Al Tamimi & Company의 하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Muhammad Ammad Yasin 변호사, Muhammad Mitha 변호사는 이자라 (Ijarah), 무라바하 (Murabaha) 등 주요 이슬람 금융 기법, 이슬람 채권 (Sukuk) 발행구조, 해외대주단이 경험하는 주요 이슈를 논의하며, 김승현 변호사와 박이세 변호사는 건설 계약의 contractual time bar와 시효기간, 중재비용과 이자 등 이슬람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실무상의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본 웨비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웨비나는 Al Tamimi & Company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공동 주최하며, 해외건설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김승현 변호사, 송형민 변호사, 중동계약법의 주요 실무 쟁점 연구에서 공동 발표

알타미미 한국팀의 김승현 변호사와 송형민 변호사는 지난 7월 13일,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의 정기세미나에서 “이슬람법 하에서 건설계약법의 주요 쟁점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동 논문은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의 건설계약법의 주요 실무 쟁점들인 계약적 Time-bar와 시효법리, 손해배상액 예정, 설계사의 책임, 동시지연, 조건부 지급조항, 공사중단과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 영미법 및 다른 대륙법들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 해외건설실무자와 학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발표 현장에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Korea Group Deals and Cases

알타미미 한국팀의 주요 업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네오위즈그룹의 블록체인 지주사 설립 자문

알타미미의 하지원 변호사와 아부다비 사무소의 기업자문팀은 네오위즈의 자회사인 네오플라이가 UAE 의 금융프리존인 ADGM 에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한 글로벌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할 자회사 H Lab 을 설립하고 아부다비 투자진흥청 (ADIO) 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정부의 규제 특례 등을 지원받는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H Lab은 ADGM의 금융당국인 FSRA 가 추진하는 디파이 규제 법제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하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은 물론, 기타 10 여곳의 국내 주요인터넷기업, 게임사, 핀테크업체 등의 ADGM 진출과 그에 따른 적용 규제 등과 관련한 자문 및 법인/재단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금융법 조사 용역 수행

올 초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UAE),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양국간 투자협약의 이취, 공공부문의 상호투자에 대한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은 향후 예상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로의 역외 대출 및 투자 관련하여 주요 금융 관련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하지원 변호사와 각국의 금융팀은 각국의 외환 관련 규제, 담보 및 보증 취득과 관련한 주요한 법률 이슈, 제반 세무이슈 등에 관련하여 자문한 바 있습니다. 알타미미의 금융 및 프로젝트 팀은 해외대주단의 역외대출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내 메가프로젝트들에서 각각 발주처, 스폰서, 대주단, 차주 (프로젝트컴패니) 등을 자문하고 대리하며 축적한 방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중동 7개국 자문

알타미미는 국내 주요 제조사가 해외 각국의 대리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향후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 대리점의 수집 가능 정보 및 수집/처리에 필요한 절차 및 규제 내용과 관련하여,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스라엘 등 총 7개국에 걸쳐 현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의 국외이전 등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알타미미는 중동 내 GCC6개국 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모로코에 직접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그간 축적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어 각 분야별, 국가별 필요한 현지법 자문을 원스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신청 대리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조세팀은 국내 제조업체의 사우디 지사를 대리하여 사우디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6개월 연장된 가산세 면제 특례 (tax amnesty) 제도에 기한 면제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산세 면제는 통상 조세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인바, 본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국세청이 알타미미 조세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요르단 풍력발전소 지분매각 관련 자문

알타미미 요르단 사무소는 현재 한국전력이 해외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르단 푸제이즈 (Fujeij) 풍력발전소 지분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존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매각거래를 위한 선행조건, PF 대주단에 대한 사전 통지 요건,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한화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동내 구조 재조정 (Restructuring) 자문

하지원 변호사의 주도하에 알타미미 아부다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Structuring)팀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한화그룹의 항공, 우주, 방산사업 계열사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합법인 구축 이후, (주)한화 및 한화디펜스의 아부다비 지사 통폐합과 향후 중동 신규 사업의 핵심거점이 될 한화시스템의 아부다비 지사 설립 등에 자문하며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중동내 구조 재조정에 활발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알타미미는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비전, PSM 등의 중동 내 법인의 현지 운영과 관련하여 상시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사우디 EPC 합작법인 설립

송형민 변호사와 리야드 사무소의 Hesham Al Homoud 변호사는 국내건설사와 사우디건설사의 사우디 EPC 합작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사우디 EPC 합작법인은 아람코의 National EPC Champio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송형민 변호사와 Hesham Al Homoud 변호사는 EPC 법인 설립 요건의 검토, 주주간계약서 및 정관 작성, 인허가 취득 등 설립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의 조세소송 대리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조세팀 Jad Khazaal 및 Nashmi Al Otaibi 변호사는 국내 건설사의 사우디 지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불복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간주과세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서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조세팀은 대응전략 수립, 서면 작성 및 변론 등 포괄적인 자문을 통해 과세처분 금액에 대하여 80% 이상을 승소하였습니다.

사우디 기업회생절차 내에서의 기업인수에 대한 자문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리야드 사무소의 기업팀 및 송무팀은 국내 제조업체를 위하여 사우디 파산법상 기업회생절차 및 기업회생절차 내에서의 기업인수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는 사우디 상장 법인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내에서의 기업인수를 통해 사우디 상장법인을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알타미미 리야드 사무소의 송형민, Chris Webb 및 Mohammed Negm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요건과 절차, 상장규정, 기업인수 절차 등 회사법, 파산법 및 상장규정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건축사무소의 사우디 자회사 설립 자문

송형민 변호사는 국내 건축사무소의 사우디 자회사 설립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리야드 사무소 기업팀은 회사 설립을 위한 전략 수립부터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에 걸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우디 회사법은 건축사무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우디 주주의 지분이 25%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만 주주인 외국 건축사무소가 4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의 업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단독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폐축매 재활용업체인 P사의 샤자 (Sharjah) 법인 설립

하지원 변호사는 알타미미 샤자사무소의 기업법무팀과 함께 폐축매 재활용을 통한 귀금속 회수 및 정제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내최대 업체가 아랍에미리트 샤자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Warehouse 를 취득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Al Tamimi & Company's Insights

알타미미는 정기간행물 Law Update, 최신 입법, 개정, 규제의 변화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최신법률정보 Client Alert 을 비롯한 다양한 간행물과, 시기적절한 주제의 웨비나, 강연물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중동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Arab Health 2023 컨퍼런스 - 사우디, UAE 등 중동 주요국의 헬스케어 마켓, 규제 동향 (2023년 2월 8일)

올 초 두바이에서 2일에 걸쳐 개최된 Arab Health 2023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중동 주요 국가들의 헬스케어 최신 동향 및 규제 및 법령 등 컨퍼런스에서 다룬 각 세션들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며 기업들이 주목할 부문들을 논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법인세 도입 - 주요 하이라이트 (2023년 2월 28일)

UAE에 신규 도입된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을 하이라이트 한 알타미미 조세법무그룹의 웨비나 영상입니다. 알타미미 두바이 사무소의 조세법무그룹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정부 발표를 기반으로 UAE의 법인세의 주요 측면들을 다루고, 기업이 준비할 사항등을 논의했습니다.



UAE ESG, 그린 본드 및 펀드 동향 (2023년 5월 10일)

아부다비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Mark Brown과 두바이 사무소의 ESG 컨설턴트인 Hamza Al-Haboubi는 UAE 정부가 발표한 2050년까지 제로탄소 달성 및 그린 파이낸스를 지원하기 위한 UAE의 법률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린 본드 발행 사례와 COP28 행사 개최를 사례를 논의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금융 투자에 대한 전망도 공유합니다.



쿠웨이트에서 외국판결 강제 집행 절차 (2023년 5월 11일)

알타미미 쿠웨이트 사무소는 외국판결 및 외국 중재판정을 쿠웨이트에서 집행할 때 이슈들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의 관할권이 집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 판결의 무효성과 확정성, 뉴욕협약과 상호보완성 요소가 외국판결을 쿠웨이트 법원에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도록 합니다.



오만의 녹색수소 발전 등 에너지 분야 개발 및 동향 (2023년 5월 30일)

알타미미 오만 사무소는 오만의 그린수소 부문의 동향을 소개하고 중동에서 가장 크고 긴 그린 수소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가인 오만이 이 산업 부문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는지를 설명하고 오만의 에너지 부문의 동향을 논의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알타미미의 다른 강연
영상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mimi Talks 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최대 로펌인 알타미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각 사법권의 최신 법률 뉴스와 동향을 전달하는 팟캐스트 시리즈입니다.

알타미미의 팟캐스트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in

Korea Group - Al Tamimi & Company - MENA

in  

Al Tamimi & Company

@AlTamimiCompany

www.tamimi.com

